

2019학년도 단체협약서 변경안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변 경 안	비고
제1조(유일교섭단체) 대학은 본 조합이 모든 조합원을 대표하여 <u>단체교섭권</u> 을 가진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하며, 조합의 자주적인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의 정당한 행사를 보장한다.	제1조(<u>교섭단체</u>) 대학은 본 조합이 모든 조합원을 대표하여 <u>단체교섭권을 가진 단체임을 인정하며, 조합의 자주적인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의 정당한 행사를 보장한다.</u>	‘유일교섭단체’ 또는 ‘단체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단체’라는 표현은,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바 이를 바로잡고자 함
부 칙 제1조(유효기간)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.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은 지속된다.	부 칙 〈현행과 동일〉	